

요약

최근 중국·대만에서는 건강고지 면제 의료보험과 재택 급성기 치료 보장보험이 각각 출시되어 가입심사와 보험금 지급요건이 완화·확장되고 있음. 이와 함께 중국은 자산부채관리와 상품개발·가격결정의 연계를, 대만은 금리연동형 보험의 정보제공을 강화하였고, 홍콩은 에이전틱 시의 활용 가능성과 통제방식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을 추진하는 등 영역별 관리체계도 정비되고 있음

1. 가입심사 완화와 지급요건 확장

가. 중국: 건강고지 의무 면제와 가입 후 검진·건강관리의 결합

○ 중국 건강보험시장에서는 가입 단계의 건강고지 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가입 이후 조기검진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결합하여 위험관리를 보완하는 상품이 등장하고 있음

- 중국평안건강보험회사는 2026년 7월 건강고지 면제 의료보험인 ‘평안e생보·전민판2026(平安e生保·全民版2026)’을 출시하였음¹⁾
 - 동 상품은 건강고지 없이 18~80세가 가입할 수 있고 1년 만기 상품으로 최고 99세까지 갱신이 가능하며 6개 특정 기왕증을 제외한 일반적인 기왕증을 모두 보장대상에 포함함²⁾
 - 연간 의료비 보장한도는 최고 600만 위안이며, 보장대상 범위에서 2만 위안의 면책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전액 지급하고 동시에 가입한 가족구성원 간에는 면책금액 한도를 통합 적용할 수 있음
 - 입원 시점 전후 30일 이내의 외래·응급 진료를 보장하고 병원 외부에서 처방·구입하는 의약품·의료기기 보장 한도도 최고 600만 위안이며, 병원 외부에서 처방·구입하는 항암 특수약품은 295종으로 확대하고 인터넷 의약품 구매 수요에 대응하는 선택형 특약을 제공함
 - 보험 가입자에게 가입 후 30영업일 이내에 폐CT, 경동맥 초음파, 당화혈색소 등 25개 항목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제공하여 피보험자의 건강위험을 파악하고 건강관리 참여를 유도함
 - 검진지표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보장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가입자의 건강관리 참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1) 中国日报网(2026. 7. 29.), “平安e生保·全民版2026上市: 投保享25项早筛推动全民健康管理”; 平安健康保险, ““平安e生保·全民版2026”; 东方财富网 财富号(2026. 7. 28.), “免健告可投! 平安e生保·全民版2026上市, ‘服务×保险’激活主动健康管理新玩法”

2) 비보장 기왕증은 보험 가입 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진단·치료받은 종양성 질환, 간·신장 질환, 심뇌혈관 및 당·지질대사 질환, 폐질환, 기타 중증질환과 가입 이전 사고로 인한 상해를 의미함

- 동 상품은 가입 단계의 건강고지 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가입 이후 건강검진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결합하여 건강위험 관리기능을 보완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건강고지 의무 면제에 따른 역선택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면책금액과 6개 특정 기왕증 비보장 조항을 두고 있음
 - 다만 보험기간이 1년인 비보증 갱신 상품이므로 동일한 조건의 장기 보장을 전제할 수 없으며, 손해율과 보장 지속성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나. 대만: 병원 보장에 재택 급성기 치료 보장 추가

○ 대만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범위가 병원 입원 보장에서 재택치료 보장으로 확장되고 있음

- 대만 위생복지부(MOH)는 2024년 7월부터 폐렴·요로감염·연조직감염 등 3개 감염증을 대상으로 ‘재택급성기 치료(在宅急症照護)’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음³⁾
 - 거동이 어려운 재가·시설 거주 환자가 입원 대신 자택이나 요양기관에서 의료진의 정기 방문진료를 받는 방식이며, 2024년 7월부터 2026년 4월까지 누적 7,788건이 이용되었음⁴⁾
 - 2026년 5월부터는 감염증 입원환자 중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저하되었거나 의료 접근성이 낮은 환자의 조기퇴원 후 자택 정맥 항생제 치료 유형이 추가되었으며 연간 1,200건 이용이 예상됨⁵⁾
-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FSC)에 재택급성기치료를 보장하는 보험상품 시범사업을 신청한 생명보험회사는 국태·부방·남산·신광·개기 등 5개 생보사이며, 2026년 8월 기준 국태생명 및 부방생명이 각각 상품을 출시하였음⁶⁾
 - 국태생명은 2026년 8월 업계 최초로 ‘택심안(宅心安) 1년 정기 입원일당 및 재택급성기치료 의료건강보험’을 출시하여 입원일당과 재택급성기치료 일당을 함께 보장하였음
 - 부방생명도 2026년 8월 ‘안심재가(安心在家) 1년기 입원의료건강보험’을 출시하여 입원과 재택급성기치료를 이중으로 보장하고 가입자의 건강관리 상황에 따른 보험료 할인을 제공함
 - 다만 해당 상품들은 1년 정기형(비보증 갱신)으로, 계약 만료 후 동일한 조건의 보장 지속이 보장되지 않으며 향후 재가입 조건은 제도 변화와 상품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재택급성기치료 보장보험은 대만 공적 의료제도에서 시범 운영 중인 재택급성기치료를 민영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추가한 사례임
 - 현재 보험상품이 보장하는 재택급성기치료는 공적 시범사업의 대상인 폐렴·요로감염·연조직감염 등 3개 감염증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음
 - 민영보험회사가 이러한 새로운 치료방식을 보장대상으로 편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치료의 이용 및 비용에 관한

3) 中央社(2026. 7. 23.), “在宅急症照護保單 國泰富8084邦南山人壽申請試辦審查中”; 급성기치료는 폐렴, 요로감염, 연조직감염 등과 같이 증상이 갑자기 악화된 환자에게 상태 안정과 회복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의미함

4) 經濟日報(2026. 9. 8.), “在宅急症照護新保單再添一張! 南山人壽獲准發行”

5) Ankecare 創新照顧(2026. 5. 15.), “健保在宅急症照護擴大 新增提早出院模式5月上路”

6) 中央社(2026. 8. 27.), “居家照護需求增 富邦國泰壽險2大龍頭推在宅醫療保單”

경험통계가 요율 산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따라서 이 사례는 기존의 입원일당 보장에 공적 의료제도에서 인정한 재택급성기치료를 새로운 보험금 지급사유로 추가한 사례로 볼 수 있음

2. 자산부채 정합성과 금리연동형 보험 정보제공에 대한 관리 강화

가. 중국: 자산부채관리(ALM)와 상품개발·가격결정의 연계

○ 중국 금융감독관리총국(NFRA)은 보험회사의 자산부채관리를 상품개발·가격결정 및 자산배분 의사결정과 직접 연계하도록 하는 규제체계를 정비하였음

- 금융감독관리총국(NFRA)은 2026년 8월 「보험회사 자산부채관리방법」(이하 ‘동 방법’)을 공포하고 2027년 1월 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감독지표 미달 보험회사에는 3년의 유예가 허용됨⁷⁾
 - 동 방법은 2018년 이후 「보험 자산부채관리 감독 잠정방법」과 5개 감독규칙에 분산되어 있던 요구사항을 통합한 것이며, 2026년 보험업 새 회계기준의 시행에 따른 자산부채 매칭지표의 계산기준 조정과도 연계되어 있음⁸⁾
 - 동 방법은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에 모두 적용되며, 업권별 부채특성을 반영하여 자산부채관리 목표의 측정방식과 감독지표를 달리 규정함
 - 보험회사는 자산부채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업무계획과 상품개발, 상품 가격결정, 보험영업 관리, 자산배분 정책, 대규모 투자 및 위탁투자 단계에서 자산부채 연동관리를 강화해야 함
- 동 방법은 최저기준이 설정된 감독지표와 위험의 식별·경보에 사용되는 모니터링지표를 구분하여 규정하였음
 -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감독지표로 금리위험 헷지율(50~150%, 50% 미만인 회사는 현금흐름 유입 금리민감도 5% 이상), 종합투자수익 커버리지비율(100% 이상), 순투자수익 커버리지비율(100% 이상) 및 유동성커버리지비율(100% 이상)이 설정됨⁹⁾
 - 생명보험회사의 모니터링지표로는 유효듀레이션갭, 베이시스포인트 가치변동률, 이차 지표 및 유동성매칭률 등이 설정되며 최저기준은 두지 않음
 -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경영모델을 고려하여 지표별로 차등화된 예경치 또는 예경구간¹⁰⁾을 설정하고, 적시에 리스크 경고를 하거나 자산부채 매칭상황 악화를 예방하는 관리계획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감독지표가 미달하거나 자산부채관리에 결함이 있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감독면담, 감독의견서 발부, 스트레

7) 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2026. 8. 21.), 「保险公司资产负债管理办法」; 新华网(2026. 8. 21.), “金融监管总局发文着力提升保险业资产负债管理水平”

8) 国家金融监督管理总局(2026. 8. 21.), “有关司局就《保险公司资产负债管理办法》答记者问”

9) 종합투자수익의 커버리지비율은 전체 투자수익의 부채비용 총당 정도, 순투자수익의 커버리지비율은 안정적 투자수익의 보증비용 총당 정도,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예상 현금유출에 대한 유동성 확보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임

10) 예경치 또는 예경구간은 감독당국이 보험회사의 경영모델 등을 고려하여 자산부채관리 감독지표와 모니터링지표에 차등적으로 설정하는 위험 경계값 또는 범위를 의미함

스 테스트 강화 요구, 보고 빈도 상향 및 현장검사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나. 대만: 금리연동형 보험의 상품설명서와 정기 안내서 제공 내용의 강화

○ 대만은 금리연동형 보험의 판매 시점 설명과 계약 유지기간 중 정보제공을 함께 강화하여 비보증 이익 등 주요 정보에 대한 계약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있음

-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FSC)는 2026년 7월 「생명보험업의 금리변동형 보험상품 업무 취급 시 유의사항」(이하 '유의사항')을 개정하고 상품설명서·정기 안내서 관련 신설 규정을 2027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¹¹⁾
 - 상품설명서에는 해당 상품이 은행예금이나 그 대체상품이 아니라는 점, 공시이율이 고정·보증이율이 아니라는 점, 부가비용 부과로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문구로 기재해야 함
 - 제안서에는 보증·비보증 급부를 구분하고, 상품유형별 공시이율 시나리오에 따른 계약이익 예시와 보험연도 말 정보를 제시하며, 계약자의 서명으로 모집인의 설명 이행을 확인하도록 함
 - 계약일로부터 1년 경과 후에는 약정한 방식으로 매년 증권정보, 공시이율·적용기간, 증치회계분할금(공시이율 등에 따른 비보증 이익)의 처리방식, 해약환급금 등을 통지해야 함
 - 아울러 동 유의사항의 내용을 「보험업 내부통제 및 감사제도 실시방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 항목에 포함하도록 하여 회사 차원의 준수체계를 요구함

3. 홍콩: 에이전틱 AI의 실무 검증과 감독기관 공동 관여

○ 홍콩은 4개 금융감독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생성형 AI 샌드박스, 'GenA.I. Sandbox++'를 통해 보험을 포함한 금융권 전반의 에이전틱 AI 활용을 실무 환경에서 검증하고 있음

- 홍콩 금융관리국(HKMA)·증권선물위원회(SFC)·보험업감독국(IA)·강제성적립금계획관리국(MPFA)은 2026년 8월 사이버포트¹²⁾와 공동으로 'GenA.I. Sandbox++'의 1차 참여기관을 선정하였음¹³⁾
 - 약 100건의 신청 가운데 36개 사용사례가 선정되었으며 금융기관 30개사와 기술기업 27개사가 참여하고, 선정은 혁신성·기술적 복잡성·산업적 가치와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의견을 기준으로 이루어짐
 - 이번 실증은 콘텐츠 생성을 넘어 AI가 더 큰 자율성을 책임 있게 수행하는 방식을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두며, 고객 가입·지급결제·보험금 청구·고객 응대 등 상품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업무 프로세스를 시험대상으로 함
 - 기존 샌드박스에서 다른 'AI 대 AI' 주제를 확장하여 하나의 AI가 다른 AI의 수행행위를 동적으로 감독하는 방식도 함께 검증함

11) 金融監督管理委員會(2026. 7. 14.), “金管會修正「人身保險業辦理利率變動型保險商品業務應注意事項」規定, 強化利率變動型保險商品資訊揭露機制及保障保戶權益”

12) 사이버포트는 홍콩 정부가 100% 소유한 공공 기업으로, 홍콩을 혁신 및 기술(I&T)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디지털 기술 혁신 단지임

13) HKMA·SFC·IA·MPFA(2026. 8. 27.), “First cohort of GenA.I. Sandbox++”

- 참여기관은 사이버포트 인공지능 슈퍼컴퓨팅센터가 운영하는 지정 플랫폼에 순차적으로 참여하며 연내 기술실증을 시작할 예정임
- ‘GenA.I. Sandbox++’는 2024년 은행권을 대상으로 시작한 생성형 AI 샌드박스를 2026년 3월 증권·자본시장, 자산운용, 보험, 강제성적립금 및 선불결제수단 부문까지 확대한 것임¹⁴⁾
- 개별 회사가 기술을 먼저 도입한 뒤 감독당국이 사후에 규율하는 방식과 달리, 감독기관·금융회사·기술기업이 동일한 환경에서 책임소재와 통제방식을 초기 단계부터 함께 확인하는 구조임

4. 종합 평가 및 시사점

- 중국·대만·홍콩 보험시장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방식과 AI 활용이 확대되는 한편, 자산부채관리·가입자 정보제공·기술통제 등 각 영역의 관리체계도 강화되고 있음
 - 상품 측면에서는 중국의 건강고지 면제 의료보험이 유병자·고령자의 가입 접근성을 높이고, 대만의 재택급성기치료 보험이 병원 입원 중심의 지급요건을 완화하였음
 - 리스크관리 측면에서는 중국이 상품개발·가격결정·자산운용을 ALM과 연계하고, 대만이 금리연동형 보험의 공시이율과 비보증 이익 등 정보에 관한 상품설명·정기 안내·내부통제를 강화하였음
 - AI 활용 측면에서는 홍콩이 감독기관 공동 샌드박스의 실증대상을 선정하고, 핵심 금융업무에서 에이전틱 AI의 활용 가능성과 책임소재·통제방식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을 추진하고 있음
- 국내 보험산업에서도 상품 혁신과 이를 운영할 관리기반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유병자·고령자의 보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가입 단계의 건강고지를 완화하는 경우, 면책금액과 보장제외 기준뿐 아니라 가입 이후 검진·건강관리 서비스를 활용한 위험관리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음
 - 다만 중국 사례는 1년 만기의 비보증 갱신 의료보험이므로 국내 장기 건강보험과 비교할 때 보험기간, 갱신구조 및 보장 지속성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재택의료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확대될 경우, 공적 의료제도에서 인정되는 재택치료 서비스의 일부를 민영보험의 보장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공적 의료제도의 적용대상과 지급기준을 바탕으로 보험금 지급요건을 명확히 설정하는 한편, 적절한 보험료 산출을 위한 이용량·비용 등의 경험통계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금리연동형 보험에서는 판매 시점뿐 아니라 계약 유지기간 중에도 공시이율과 비보증 이익 등 계약자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적절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대만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에서도 관련 정보가 계약자에게 충분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현행 정보제공 내용과 이행체계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내부통제 및 내부감사와의 연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14) HKMA·SFC·IA·MPFA(2026. 3. 5.), “Regulators launch GenA.I. Sandbox++ to foster A.I. innovation across financial services”

검토할 수 있음

- 생성형 AI가 보험금 심사·계약관리·언더라이팅 등 핵심 업무로 확대될 경우 감독당국과 보험회사가 실제 업무환경에서 오류 대응, 개인정보 보호, 책임소재 및 사람의 개입조건을 사전에 함께 검증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홍콩 사례는 4개 금융감독기관이 공동 플랫폼에서 실증하는 방식이므로, 국내에 적용할 경우 감독기관과 보험회사가 검증 결과를 공유하는 절차와 실증 대상 업무의 범위를 함께 설계해야 함

○ 이들 사례는 서로 다른 정책·상품 영역의 변화이므로 단일한 감독방향으로 일반화하기보다, 보장방식·기술 활용의 혁신과 리스크관리·소비자보호의 과제를 영역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표 1〉 중국·대만·홍콩 보험시장의 주요 상품·규제 변화와 의미

구분	시장	주요 변화	의미
상품	중국	• 건강고지 의무 면제 및 25개 항목 조기검진을 결합한 의료보험 출시 (2026. 7.)	• 건강고지 의무를 면제하고 가입 후 검진·건강관리 서비스를 결합하여 위험관리 기능을 보완 • 면책금액과 특정 기왕증 비보장 등을 통해 건강고지 면제에 따른 역선택 위험에 대응
	대만	• 입원과 재택급성기치료를 함께 보장하는 1년 만기 건강보험 출시 (2026. 8.)	• 공적 의료제도에서 인정된 재택급성기치료를 새로운 보험금 지급 사유로 추가 • 공적 시범사업의 대상범위와 관련 경험통계를 바탕으로 보험상품의 보장범위 및 요율을 설계
규제	중국	• 자산부채관리방법 제정 (2026. 8. 공포, 2027. 1. 시행)	• 상품개발·가격결정·자산배분을 자산부채관리와 연계 • 감독지표·모니터링지표를 활용해 자산부채 불일치 위험을 조기 경보·관리
	대만	• 금리연동형 보험의 상품설명서·정기 안내서·내부통제 강화 (2026. 7. 개정)	• 규율범위를 공시이율 산출 단계에서 설명·통지 및 내부통제 단계로 확대 • 비보증 요소 등 주요 정보의 지속적 안내와 계약자 알권리 강화
	홍콩	• 4개 금융감독기관 공동 ‘GenA.I. Sandbox++’ 1차 참여기관 선정 (2026. 8.)	• 핵심업무에서 AI의 활용 가능성과 책임성·통제방식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 추진 • AI가 다른 AI의 행위를 감독하는 방식 등을 실증 대상으로 포함

자료: 저자가 정리함